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30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안태준 · 문진석 · 정준호
조정식 · 김영진 · 이연희
전용기 · 윤종균 · 이정문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취업자에”를 “취업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를 “3년이 되는 날이”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중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60세----- ----- ----- ----- ----- ----- ----- ----- ----- ----- ----- <u>-3년이 되는 날이-</u> ----- ----- ----- ----- -----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
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
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신 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이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중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④ -----제3항-----

-----.
- ⑤ -----
제4항-----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

-----제1항 및 제2항-----

⑥ 제5항-----

-----제1항 및 제2항-----

⑦ 제6항-----

제1항 및 제2항-----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
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
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
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
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
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
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
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
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

-----.

⑧ 제3항-----
-----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2항-----

-----.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

⑩ -----제9항까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
---------------------------	-----------------